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4.

발 의 자 : 김기표 · 권철승 · 이연희
김태선 · 박상혁 · 박홍배
황명선 · 오세희 · 민홍철
김영배 · 이주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질병 휴직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하다 사망에 이르는 등 열악한 근로 실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 이는 보육교직원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와 영유아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음.

현행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그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보육교직원이 휴가, 질병,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·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

로써 보육교직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. 또한 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,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17조 및 제42조 등).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중 “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”을 “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는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육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 업무를 대행할”로, “배치한다”를 “배치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”을 “그 밖에 보육교직원·대체인력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, 대체인력의 자격 및 지원 범위,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의 구축·운영”으로 한다.

1. 관계 법령, 정관 또는 어린이집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연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(결혼, 사망, 출산휴가, 모성보호 휴가 등을 포함한다)를 사용하는 경우
2. 연수, 보수교육, 보육 현장 지원을 위한 파견 또는 출장 등에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

3. 「병역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
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는 경우
5. 본인 및 가족의 질병·사고,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긴급지원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⑤ 제4항에 따라 배치되는 대체인력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원활한 배치를 위하여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연계된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(이하 “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의 운영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42조의 제목 중 “검사”를 “검사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휴가 사용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 현황 등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

그 설치·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관할청에 이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주기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제3호 중 “제17조제5항에”를 “제17조제7항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보육교직원의 배치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7조(보육교직원의 배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는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육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 업무를 대행할----- -----배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관계 법령, 정관 또는 어린이집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연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(결혼, 사망, 출산휴가, 모성보호 휴가 등을 포함한다)를 사용하는 경우</u></p> <p>2. <u>연수, 보수교육, 보육 현장 지원을 위한 파견 또는 출장 등에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</u></p> <p>3. 「병역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</p>

<신 설>

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9조
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
강진단, 「국민건강보험법」
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
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제1항
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는
경우

<신 설>

5. 본인 및 가족의 질병·사고,
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
긴급지원 등 교육부령으로 정
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
경우

<신 설>

⑤ 제4항에 따라 배치되는 대
체인력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
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
람이어야 한다.

<신 설>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
4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원활한
배치를 위하여 「유아교육법」
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
따른 학교와 연계된 통합 대체
인력 지원시스템(이하 “통합대
체인력지원시스템”이라 한다)
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이
경우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

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(보고와 검사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원센터를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의 운영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⑦ 그 밖에 보육교직원·대체인력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, 대체인력의 자격 및 지원범위,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의 구축·운영-----
-----.

제42조(보고와 검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휴가 사용 및 제17조 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 현황 등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·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관할청에 이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44조(시정 또는 변경 명령)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·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1. ~ 2의2. (생략)
 3.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
- 3의2. ~ 8. (생략)

⑤ 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주기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(시정 또는 변경 명령) --

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 3. 제17조제7항에-----

--
- 3의2. ~ 8. (현행과 같음)